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
행정사무감사 · 조사시 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전순애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2849

발의연월일 : 2026. 8. 19.
발의의원 : 전순애 의원,
김이석 의원, 이상봉 의원

1. 제안이유

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· 조사 시 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· 징수 관련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을 생년월일로 정비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방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과태료 관련 서식의 개인정보 기재사항 정비(별지 제3호서식, 별지 제4호서식)

3. 개정 조례안 : “붙임”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나. 비용추계서 : 비대상

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　　호

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·조사시 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·조사시 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3호서식 중 “주민등록번호”를 “생년월일”으로 한다.

별지 제4호서식 중 “주민등록번호”를 “생년월일”으로 한다.

부　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

[별지 제3호 서식]

【별지 제3호 서식】

제 호

과 태 료 납 부 독 촉 장

납부의무자	①성 명		②주민등록번호	
	③주 소			
④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				
⑤위 반 사 항				
⑥과 태 료 금 액		⑦당초납부기일		

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달성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
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.

년 월 일

달 성 군 수 (인)

[별지 제4호 서식]

【별지 제4호 서식】(개정 2011.9.23)

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이 의 신 청 서

신청인	①성 명		②주민등록번호	
	③주 소			
과태료처분내역	④부 과 기 관		⑤납부통지서번호	
	⑥고지받은일자		⑦과 태 료 금 액	
	⑧과태료처분사유			
⑨ 과태료처분에대한불복사유				

「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」 제6조규정에 의거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: (인)

달 성 군 수 귀하

개 정 안

[별지 제3호 서식]

【별지 제3호 서식】

제 호

과 태 료 납 부 독 촉 장

납부의무자	①성 명		②생 년 월 일	
	③주 소			
④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				
⑤위 반 사 항				
⑥과 태 료 금 액		⑦당초납부기일		

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달성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
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.

년 월 일

달 성 군 수 (인)

[별지 제4호 서식]

【별지 제4호 서식】(개정 2011.9.23)

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이 의 신 청 서

신청인	①성 명		②생 년 월 일	
	③주 소			
과태료처분내역	④부 과 기 관		⑤납부통지서번호	
	⑥고지받은일자		⑦과 태 료 금 액	
	⑧과태료처분사유			
⑨ 과태료처분에대한불복사유				

「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 불출석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」 제6조규정에 의거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: (인)

달 성 군 수 귀하

참고 **상위 및 관계법령(발췌)**

□ 「상업등기법(법률)」(2024.9.20. 일부개정, 2025.1.31. 시행)

제15조(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) ①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. 다만,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신청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다.

□ 「상업등기규칙(대법원규칙)」(2024.11.29. 일부개정, 2025.1.31. 시행)

제26조(열람 및 각종 증명서의 신청방법) ①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증명서(이하 “등기사항증명서”라 한다) 또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□ 「개인정보보호법(법률)」(2025.4.1. 일부개정, 2025.10.2. 시행)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개인정보”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.

 가.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

 나. ~ 다. (생 략)

제16조(개인정보의 수집 제한)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.

② ~ ③ (생 략)